

전자약식절차 동의서

성명	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	
주거				
진행사항 통지방법	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 (ID)			
	휴대폰		전자우편	
	통지수단	[] 휴대폰문자서비스 [] 전자우편(E-mail)		

- 1. 동의를 하게 되면 「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률”이라 합니다) 제4조에 따라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.
- 2. 통지방법에서 선택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은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서류가 형사사법포털(www.kics.go.kr)에 등재되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.
- 3. 통지를 받은 후 위에 기재된 아이디(ID)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초기비밀번호는 위에 등록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- 4. 약식명령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.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등재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.
- 5.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처리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철회하는 경우 「형사소송법」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6. 동의를 하였어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건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「형사소송법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
「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며, 동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 등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받는 것을 원합니다.

0000. 00. 00.

신청인(피의자) :

작성자 : 계급